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효원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17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이효원, 강석주, 고광민,
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
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
김지향, 김태수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서상열,
심미경, 유만희, 윤기섭,
윤종복, 이상욱, 이성배,
이용균, 이원형, 이은림,
이종태, 이종환, 정준호,
최민규, 허훈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31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 따른 학생 대상의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'실적조사'는 단순한 양적 집계에 머무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바, 전반적인 '실태조사'에 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최근 개정된 「학교보건법」 제9조의3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기관으로서 예방교육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- 또한 교육감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고 그 내용을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목 '실적조사'를 '실태조사의 실시 등'으로 변경함(안 제6조)
- 나.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조항으로 구성하고 각 호에 실태조사 내용을 구체화함(안 제6조제1항)

다. 교육감이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제2항 신설)

라. 교육감이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실행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학교보건법」, 「청소년보호법」 등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실적조사)”를 “(실태조사의 실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교육감은 학생의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하여 「학교보건법」 제9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현황 및 효과성 평가
2.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·지식 및 태도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5조의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결과”를 “실태조사 결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중 “실적조사”를 “실태조사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제7조”를 “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”로, “일부”를 “사무 일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6조(실적조사)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제7조(예방교육의 실시 등) ① ~ ③ (생 략)</p>	<p><u>제6조(실태조사의 실시 등) ① 교육감은 학생의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하여 예방을 위하여 「학교보건법」 제9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현황 및 효과성 평가</u> <u>2.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·지식 및 태도</u> <u>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p><u>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5조의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7조(예방교육의 실시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<p>④ 학교의 장은 제6조의 <u>결과</u>에 따라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④ ----- <u>실태조사</u> <u>결과</u>----- -----.</p>
<p>⑤ (생 략)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자문위원회)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	<p>제10조(자문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(생 략) 2. 제6조에 따른 <u>실적조사</u>에 관한 사항 3. · 4. (생 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실태조사</u>----- -----</p>
<p>② (생 략)</p> <p>제11조(위탁)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<u>제7조</u>에 따른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및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유해약물 관련 전문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위탁) ----- --- <u>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</u> <u>제7조</u>----- <u>사</u> <u>무 일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에 실태조사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기존의 용어를 수정(실적조사 → 실태조사)하고 그에 맞춰서 조문을 정비 하였으며, 제6조(실태조사의 실시 등)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였음
- 수정 및 신설 조문인 조례 제6조(실태조사의 실시 등) 및 제7조(예방교육의 실시 등)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기편성(체육건강예술교육과 학교보건팀)하여 시행하고 있어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김 진 형
☎ 02-2180-7954	
e-mail : kjh0816@seoul.go.kr	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